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해지역 관할 지자체장의 소음·진동원 관할
지자체장에 대한 조치명령 요구 근거 마련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55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피해지역 관할 지자체장의 소음·진동원 관할 지자체장에 대한 조치명령 요구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2025년 7월 8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진동 유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발생 지역과 소음·진동 발생 지역이 다른 경우, 피해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소음·진동 유발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대규모 공사장, 산업시설 등으로 인한 생활소음·진동 피해가 광역적·초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관할권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에 머물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지자체 간 협력 부재로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발생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행정 절차의 지연 등으로 저감조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보호라는 법령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제2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피해지역 관할 지자체장의 소음·진동원 관할 지자체장에 대한 조치명령 요구 근거 마련

개정안은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진동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3조 제5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명하지 않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치 이행을 권고하며,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해 관할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가 속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u>

현행	개정안
<신설>	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법 제21조¹⁾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하고,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제23조²⁾에 따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제60조³⁾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소음·진동 발생 지역과 피해 발생 지역이 다른 경우,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진동 유발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⁴⁾

이에 개정안은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진동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구를 받은 소음·진동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명하지 않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치 이행을 권고하며,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규모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의 피해지역과 발생 지역이 다른 경우 현행 법령상 조치명령 주체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4) A지역의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B지역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여부 판단(소음측정 등) 및 규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자체의 질의 사례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및 제8조(행정응원) 등에 근거하여 두 지자체가 협의하여 규제기준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를 안내하였음.

단체에서 행정 대응이 지연되어 주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동 개정안은 관할권을 명확하게 정하여 피해 대응 조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가 속한 특별자치시장’을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으로 수정(안 제23조제5항)하고, ‘조치’를 ‘해당 조치’로 수정(안 제23조제6항)할 필요가 있음.

[수정안 3단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해 관할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가 속한 특별</u>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해 관할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가 속한 지역</u>

<신 설>	<u>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 ⑥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 ⑥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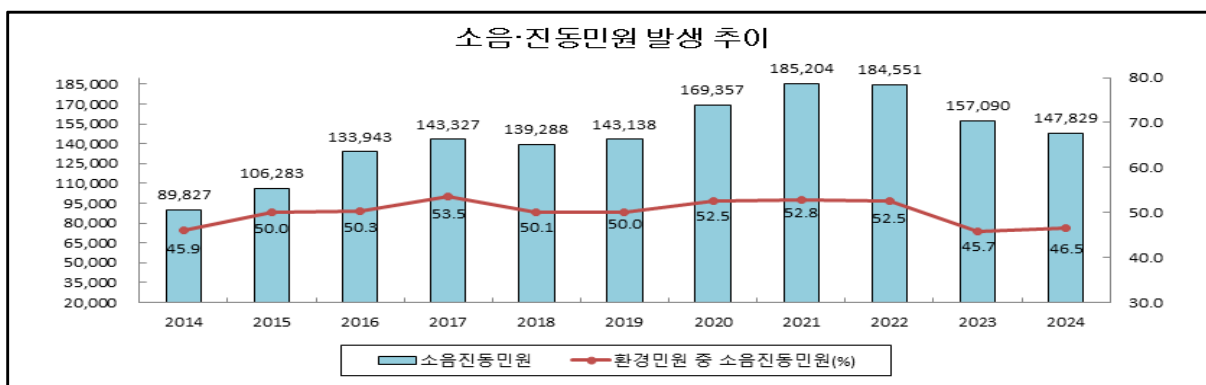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 소음·진동 민원 현황 (2024년 기준, 자료 : 기후부)

□ 소음·진동 민원 현황

- (연도별) '24년 지자체 접수 소음·진동민원은 147,82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만8천건 감소하였으며 전체 환경민원 317,999건의 46.5% 차지



- (소음원별) 공사장 소음 민원이 전체 소음민원의 70.1%(103,639건)로 가장 많으며, 사업장 14.4%(21,232건), 확성기 3.2%(4,810건) 순으로 높음
(단위 : 건수)

구분	계	생 활 소 음						공장	교통	항공기
		소계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이동소음	기타			
2024	147,829 (100.0)	145,578 (98.4)	103,639 (70.1)	21,232 (14.4)	4,810 (3.2)	3,334 (2.2)	12,563 (8.5)	826 (0.6)	1,175 (0.8)	250 (0.2)
2023	157,090 (100.0)	154,329 (98.2)	118,094 (75.2)	18,456 (11.7)	4,796 (3.0)	3,608 (2.3)	9,375 (6.0)	1,057 (0.7)	1,455 (0.9)	249 (0.2)
증감(%)	△5.9	△5.7	△12.2	15.0	0.3	△7.6	34	△21.8	△19.2	0.4

※ ()는 발생원별로 전체 민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기타 : 공장(배출업소 외), 동일건물 소음 등

□ 소음·진동 민원 조사처리 현황

-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이 부과된 건수는 0.98%(1,442건)이며, 이해설득 등을 통한 처리비율이 98.9%(146,138건)로 가장 많음
(단위 : 건수)

민원 접수건	처리내용					고발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등	공사중지 폐쇄명령	기타(경고, 이해설득 등)	
147,829	147,829	1,442	184	65	146,138	33
	100%	0.98%	0.12%	0.04%	98.86%	